

□ 경력 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

(2026. 1. 1. 기준)

구분	인정 비율	인정대상경력
사회복지 시설 및 사회복지 법인 경력	100%	<p>1. 사회복지시설*에 근무한 경력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√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주체 또는 위수탁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경력 100% 인정 * (사회복지시설) 보건복지부 ‘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’ 에서 ‘사회복지시설의 종류’ 로 열거한 시설 </div> <p>→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,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</p> <p>예)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「아동복지법」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,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</p> <p>→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,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(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, 서울시 2021년 추가)</p> <p>※ 위 요건 미충족시 80% 인정</p> <p>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</p> <p>※ ②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, 80% 경력환산은 '16.1.1.부터 적용, 100% 경력환산은 '24.1.1.부터 적용</p> <p>→ 사회복지법인의 본사무소, 사무국 등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·지원, 법인·시설 회계, 인사 등 법인 운영의 사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직원</p> <p>※ 위 요건 미충족시 80% 인정</p> <p>3.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(2002~2005.7.31.까지의 근무경력만 인정)</p> <p>→ 해당 시설장 및 시·군·구청장의 근무확인서로 확인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* 조건부신고시설 :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'02~'05.7.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, 시·군·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 시설로 전환한 시설 </div>

구분	인정 비율	인정대상경력
		<p>4.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</p> <p>→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위탁기관에 채용되어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</p> <p>※ '18.1.1부터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되, 경력합산은 '19.1.1부터 적용</p>
유사경력	80%	<p>1-1.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(면허)*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</p> <p>*요양보호사, 정신보건전문요원, 사회복지사, 언어재활사, 장애인재활상담사 등</p> <p>※ (참고 예시) 사회복지사 자격증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를 근거로 하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*에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가 규정됨</p> <p>* 1.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.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.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</p> <p>※ (적용 예시)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장소와 관계 없이(학교, 병원, 회사 등) 유사경력 인정 가능: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요망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□ 보건복지부 유사경력 Q&A (종전근무 경력을 인정하되, 경력합산은 '26.1.1부터)</p> <p>①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고 학교복지사에서 근무, ②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우, ③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한 경우</p> <p>▶ 모두 해당 자격증 규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유사경력 인정 가능</p> </div> <p>1-2. 물리(작업)치료사, 간호(조무)사, 영양사,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(면허)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*에 근무한 경력</p> <p>※ (공통)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(사회복지사 등)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□ 보건복지부 동종 경력인정 Q&A (종전근무 경력을 인정하되, 경력합산은 '26.1.1부터)</p> <p>음식점에서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조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이후 사회복지시설 조리원으로 근무한다면 유사경력 인정 가능</p> <p>* (동종직종)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(예 : 보건소 간호사 근무 →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)</p> </div> <p>2.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(특수학교)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또는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</p> <p>3.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(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)</p> <p>4. 「아동복지법」 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(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)</p>

구분	인정 비율	인정대상경력
		<p>5. 간호(조무)사, 정신보건전문요원, 사회복지사, 응급구조사 자격(면허)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(보건복지콜센터)에 근무한 경력</p> <p>6. 「아동복지법」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(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)</p> <p>7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에 의한 아동·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</p> <p>8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치료재활센터,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(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)</p> <p>9. 「아동복지법」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(드림스타트) 민간전문인력(직원)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</p> <p>10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(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경력 2번으로 이동, '24년)</p> <p>1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</p> <p>12. 「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</p> <p>13. 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</p> <p>14. 시·군·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(통합사례관리사)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</p> <p>15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원(상근간사 등)으로 근무한 경력</p> <p>※ 중전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 간사로 근무한 경력도 동일하게 인정</p> <p>16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*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·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</p> <p>* (서울시) 16-1. 보건복지부장관 → 2018년 16-2. 여성가족부장관 추가 → 2024년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</p> <p>17.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</p> <p>18.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 및 활동지원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,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수행기관에 근로지원인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</p>

구분	인정 비율	인정대상경력																								
		<p>※ 활동지원사 경력의 종전 경력은 인정하되, 경력합산은 '25.1.1.부터 적용(서울시)</p> <p>19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</p> <p>20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5조의10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</p> <p>2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(정신보건전문요원) 자격증을 소지하고,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(정신보건센터, 정신건강증진센터)에서 근무한 경력</p> <p>22. 「노인복지법」 제23조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직원 또는 노인일자리 담당자로(구 전담인력)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(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이 사회복지시설로 인정(13.12.5)되기 전의 근무경력) * 종전근무 경력을 인정하되, 경력합산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으로 일한 경우, 18.1.1,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직원 또는 노인일자리 담당자로 일한 경우 '25.1.1부터 적용(서울시)</p> <p>2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</p> <p>24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 13에 따라 설치된 피해장애인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(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)</p> <p>25. 「입양특례법」 제20조에 따라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</p> <p>26. 「북한이탈주민법」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용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한 경력</p> <p>27. 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“독거노인·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” 지침 상 사업수행기관(지역센터)에서 거점응급안전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채용되었던 자로, 수행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 직무가 ‘거점응급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’ 으로 명시된 근무경력</p> <p>28. 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69 1615 1414 1868"> <thead> <tr> <th>연도</th> <th>사업명</th> <th>직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007</td> <td>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</td> <td>서비스관리자, 독거노인생활지도사</td> </tr> <tr> <td>2008</td> <td>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</td> <td>서비스관리자, 독거노인생활관리사</td> </tr> <tr> <td>2009~2011</td> <td>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</td> <td>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, 노인돌보미</td> </tr> <tr> <td>2012</td> <td>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</td> <td>독거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, 독거노인돌보미</td> </tr> <tr> <td>2013</td> <td>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</td> <td>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, 노인돌보미</td> </tr> <tr> <td>2014~2019</td> <td>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</td> <td>서비스관리자, 독거노인생활관리사</td> </tr> <tr> <td>2020~</td> <td>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</td> <td>전담사회복지사, 생활지원사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29.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(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)</p>	연도	사업명	직종	2007	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	서비스관리자, 독거노인생활지도사	2008	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	서비스관리자, 독거노인생활관리사	2009~2011	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	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, 노인돌보미	2012	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	독거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, 독거노인돌보미	2013	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	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, 노인돌보미	2014~2019	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	서비스관리자, 독거노인생활관리사	2020~	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	전담사회복지사, 생활지원사
연도	사업명	직종																								
2007	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	서비스관리자, 독거노인생활지도사																								
2008	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	서비스관리자, 독거노인생활관리사																								
2009~2011	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	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, 노인돌보미																								
2012	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	독거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, 독거노인돌보미																								
2013	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	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, 노인돌보미																								
2014~2019	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	서비스관리자, 독거노인생활관리사																								
2020~	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	전담사회복지사, 생활지원사																								

구분	인정 비율	인정대상경력
		<p>30.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</p> <p>31.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“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” 및 “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안내” 지침 상 제공기관에서 관리책임자, 전담 관리인력, 제공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</p> <p>32. 「아이돌봄지원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전담인력 또는 지원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</p> <p>33.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19조제2항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의3 등에 따른 보훈복지서비스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훈섬김이 및 보훈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</p> <p>34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</p> <p>35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산하 지역장애인체육회(시·도 및 시·군·구장애인체육회)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로 채용되어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</p> <p>36. 「성폭력방지법」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(해바라기센터)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</p> <p>37. 「아동복지법」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</p> <p>38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</p> <p>39. 「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」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</p> <p>40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9조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</p> <p>41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4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※ ㉔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, 경력합산은 '23.1.1.부터 적용</p> <p>42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※ ㉔은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, 경력합산은 '23.1.1.부터 적용 ※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또는 사업계획서, 시설 신고증 등을 통해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지 확인 필요</p>

구분	인정 비율	인정대상경력
		<p>43.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·도 사회서비스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※ ㉔은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, 경력합산은 '24.1.1.부터 적용, 단,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근무경력은 근무 구간별 범위까지 경력인정('24년 6월말, 7월말, 10월말일까지 3구간)</p> <p>44.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상담기관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</p> <p>45. 「치매관리법」 제16조의2에 따른 광역치매센터 또는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</p> <p>46.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3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중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</p> <p>47. 복지실·시민건강국·여성가족실·평생교육국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에서 근무한 경력 ※ ㉔은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, 경력합산은 '18.1.1.부터 적용,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근무경력 인정은 ㉔번 근무구간 범위와 동일 적용</p> <p>48. 복지실 소관이며,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·운영하는 시립·구립 시설(직영 또는 위탁)에서 근무한 경력 ※ ㉔은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, 경력합산은 '24.1.1.부터 적용</p>
유의 사항		<p>1. 이 외에 사회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,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별도의 지침 기준을 추가, 적용할 수 있음.(단, 이 경우 타시설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음)</p> <p>2.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는 시설의 소관부서에서는 종사자경력 인정기준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화 또는 완화된 별도의 기준을 만들 수 없음</p> <p>3. 경력인정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함</p> <p>4. 상기 기준은 보건복지부 당해연도 「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」 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하며(항목별 경력합산 시점 등 참고), “47”는 2018년부터, “48”는 2024년부터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</p> <p>5. 종전 근무 경력을 인정하되, 경력 합산은 '△△.1.1부터 적용“의 의미 '△△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해당 경력도 포함하여 호봉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, '△△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된다는 의미로, 과거의 급여를 소급하지 않음</p> <p>6. 군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 당해연도 「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」 준용</p> <p>7. 본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당해연도 「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」 준용하고 개별시설에 관한 경력사항은 시설 소관부서에 문의(참고자료)</p>